

강 남 구 의 회



수신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2016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기간 중 주식백지신탁제도 등 신고 안내

- 1. 인사혁신처 유리과-1515(2015.12.17.)호 감사담당관-18285(2015.12.21.)호와 관련입니다.
- 2. 「공직자윤리법」제14조의4 (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)에 따른 『주식백지 신탁제도』는 고위공직자(재산공개대상자)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.
- 3. 2016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와 관련하여 주식보유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재산공개대상자는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바랍니다.
- 4. 아울러, 재산공개대상자는 <u>'15.1.1. ~ '15.12.31. 사이에 있었던 모든 주식</u> <u>거래의 내역</u>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오니 [붙임2] 자료를 참고하여 2016. 1. 29.(금)까지 주식변동사항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☞ 주식백지신탁제도 ☜

- 대상자 : <u>재산공개대상자</u>(정무직, 1급이상 공무원, 시의원, <u>구의원</u>, 공직유관단체장)
- 대상주식 : 본인,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보유한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
- 기준일 : 아래 기준일로부터 <u>1개월 이내에 매각</u>, <u>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</u>를 해야 함.
 - (1)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
 - (2) 변동사항신고 유예사유(공직자윤리법제6조의3 제1항,제2항)가 소멸된 날
 - (3) 공개대상자 등의 직무가 변경된 날(소속 위원회 변경)
 - (4) 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
- 운영절차 : 원칙적으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실시해야 하나,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할 경우 <u>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</u>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
 - ※ 심사결과 ☞ 직무관련성 있음 : 매각 또는 백지신탁 → 등록기관에 신고 → 시보에 공개(1개월이내)
 - ☞ 직무관련성 없음 : 주식 보유 가능
- 의무위반시 제재 :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붙 임: 1. 2016년 주식백지신탁심사제도 안내 1부

2. 2016년 주식거래내역 신고 안내 1부. 끝.

강 남 구 의 회 의 장

수신자 김명옥 의장,송만호 부의장,이재민 운영위원장,문인옥 행정재경위원장,박남순 복지도시위원장, 오완진 의원,양승미 의원,이경옥 의원,김병호 의원,이재진 의원,이관수 의원,한용대 의원,최민 숙 의원,최중현 의원,문백한 의원,이호귀 의원,김광심 의원,이인화 의원,서경원 의원,여선웅 의 원

주무관 **윤석호** 의정팀장 **홍남기** 구의회사무국장 <mark>01/04 이동호</mark> 협조자 시행 강남구의회-59 () 접수 () 우 0628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4 (대치동) / 전화 02-3423-8108 /전송 02-3423-8926 / ys7ho@gangnam.go.kr / 대시민공개